
‘18년도 공공기관 수시증원 요구 및 검토

〈예 산 수 반 · 비 수 반〉

2018. 5.

근로복지공단

I. 기관 일반 현황

I

기관 개요

1. 연혁 및 주요업무 [기관 유형 : 준정부기관]

□ (연 혁) '95년 기관 설립

* 現 기관장 : 심경우(임기: '16.11월 ~ '19.11월)

- 1998. 7. 1. 임금채권보장사업 수행
- 2000. 7. 1. 산재보험 전 사업장 적용 확대
- 2010. 4.28. 한국산재의료원 통합
- 2010.12. 1. 퇴직연금사업 수행
- 2011. 1. 1. 산재·고용보험 징수업무 건강보험공단 이관 및 산재보험 고용정보관리업무 수행
- 2017. 1.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 수행
- 2018. 1. 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수행

□ (주요업무)

- (산재보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 (산재재활)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직업복귀 촉진
- (의료사업) 산재환자의 의료재활 및 근로자 건강증진
- (가입·부과)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부과·자격 관리
- (근로복지)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16년 경영평가 결과) B등급

2. 재무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3	'14	'15	'16	'17
· 자산	255,637	246,719	263,192	263,694	263,974
· 부채	345,546	367,768	405,065	414,977	464,327
· 자본	△89,909	△121,049	△141,873	△151,283	△200,353
· 부채비율	-	-	-	-	-
· 영업이익	△37,576	△43,275	△22,480	△30,510	△48,627
· 당기순이익	△30,769	△35,474	△12,522	△21,765	△39,611

II

예산 현황

< 수입예산 세부 내역 ('17년은 집행액, '18년은 편성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977,605	987,622	1,013,295	1,031,603	1,202,137
자체 수입	316,140	343,096	384,891	376,215	436,940
정부 지원	425,701	446,359	457,998	489,679	585,292
출연금	366,015	386,091	400,116	421,230	453,162
출자금	0	0	0	0	0
보조금	12,233	11,233	10,007	8,505	0
부담금·이전수입	47,453	49,035	47,875	59,944	110,611
위탁·기타수입	0	0	0	0	21,519
차입	5,128	5,999	5,900	4,510	0
기타	230,636	192,168	164,506	161,199	179,905

* 자체 수입 + 정부순지원 소계 + 차입 + 기타 = 합계

< 수입예산 세부 내역 ('17년은 집행액, '18년은 편성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977,605	987,622	1,013,295	1,031,603	1,202,137
인건비	306,740	320,825	347,886	384,315	435,107
정부 지원	186,644	193,442	211,489	219,394	251,275
자체 수입	120,096	127,383	136,397	164,921	183,832
경상경비	100,251	105,895	78,099	76,621	131,398
사업비	271,769	319,384	331,076	354,418	415,191
차입상환금	14,573	7,284	5,432	2,391	86
기타	284,272	234,234	250,802	213,858	220,355

* 인건비 + 경상경비 + 사업비 + 차입상환금 + 기타 = 합계

Ⅲ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 직 : (본부) 4이사, 감사, 3본부, 1단, 9실·국, 2위원회
(소속기관) 6지역본부, 50지사, 6위원회, 1인재개발원,
1콜센터, 10병원, 1연구원, 2연구소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14	'15	'16	'17	'18.4월말
▪ 정규직	정원(A)	5,443	5,507	5,582	6,237	7,248
	현원(B)	5,342	5,365	5,452	6,048	6,971
	정현원차(A-B)	101	142	130	189	277
▪ 무기직	정원(A)	426	426	480	480	1,388.125
	현원(B)	410	438	494	402	823
	정현원차(A-B)	16	△12	△14	78	565
▪ 비정규직	현원(A)	313	309	267	324	876
▪ 간접고용	현원(A)	886	981	1,086	1,165	1,146

※ 비정규직(876명) : 휴직대체 등 보충적 근로(85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 한시적 업무(703명), 의사 등 고도 전문 직무(88명) 등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

※ 정규직 정·현원차 발생 원인

- (사유) '18년도 증원 인력(보험사업 750명, 의료사업 261명) 중 765명 채용완료, 잔여 246명(보험사업 150명, 의료사업 96명) 채용 진행 중

※ 무기계약직 정·현원차 발생 원인

- (사유) 간접고용 노동자 직고용 전환 관련 무기계약직 정원(461.125명*) 반영시점과 전환 시점('18. 5월~) 차이에 따른 결원 발생

* '18.2월 291.125명, '18.3.31.자 170.5명 기재부 정원 반영

조직도 및 부서별 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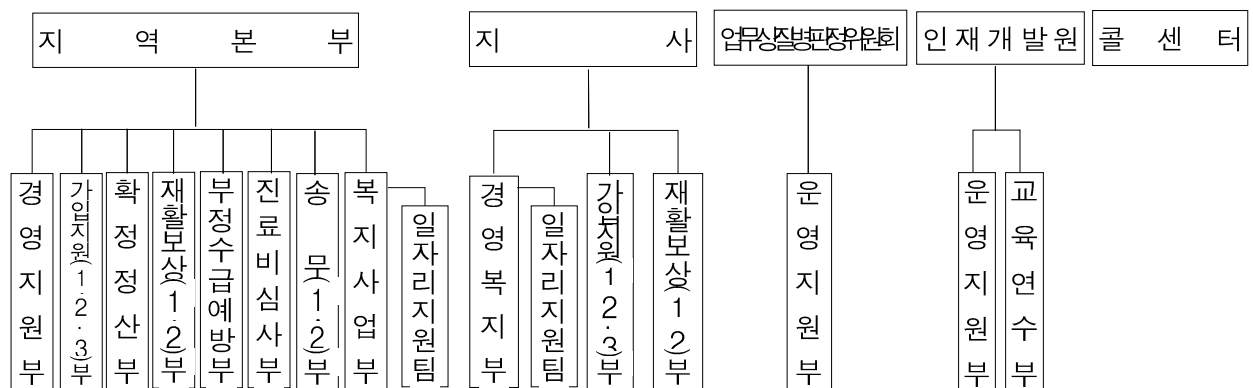
□ 조직도

○ **본부** : 4이사, 감사, 3본부, 1단, 9실·국, 2위원회, 37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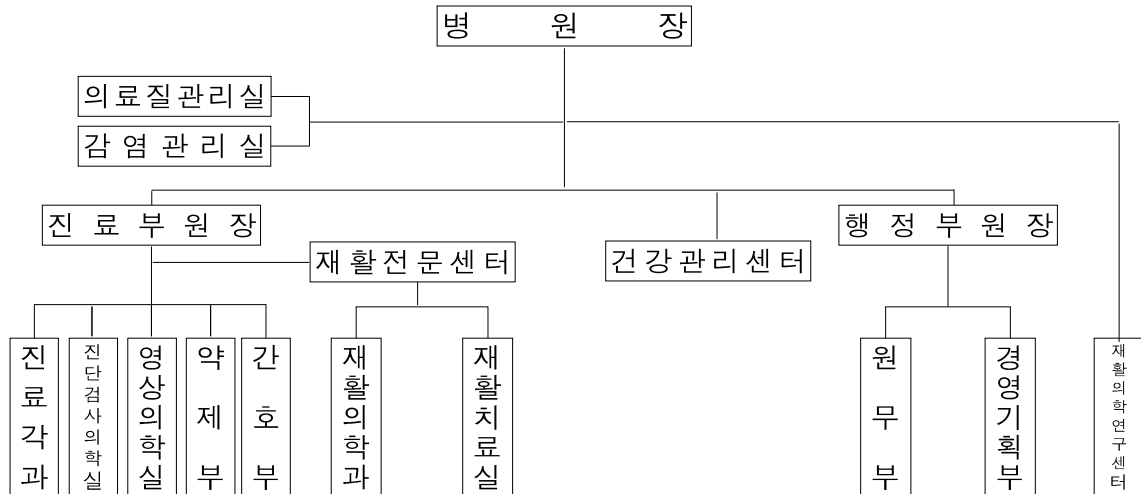


○ 소속기관: 6지역본부, 50지사, 6위원회, 1인재개발원, 1콜센터, 10병원, 1연구원, 2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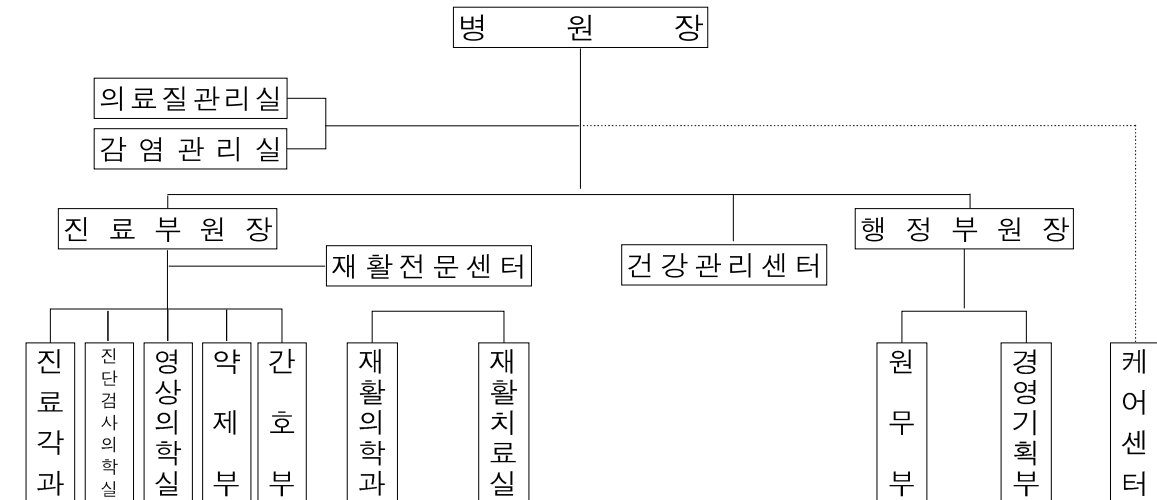
- 지역본부, 지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인재개발원, 콜센터



- 인천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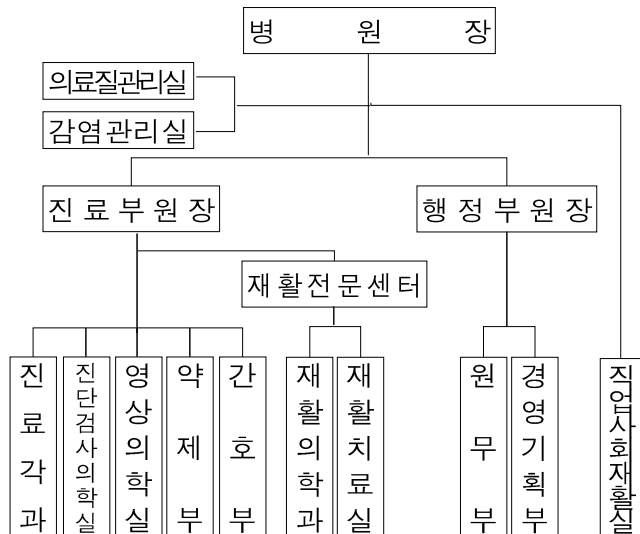


- 안산·창원·순천·대전·태백·동해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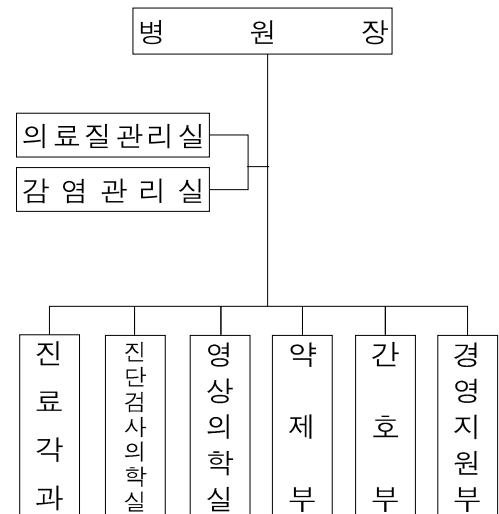


※ 케어센터는 태백병원 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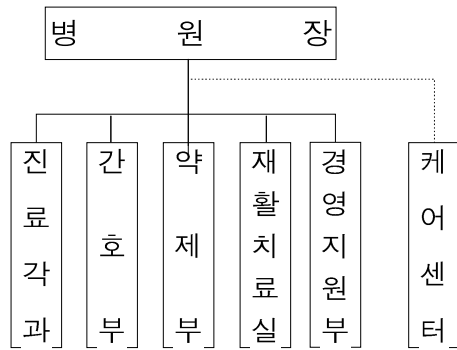
- 대구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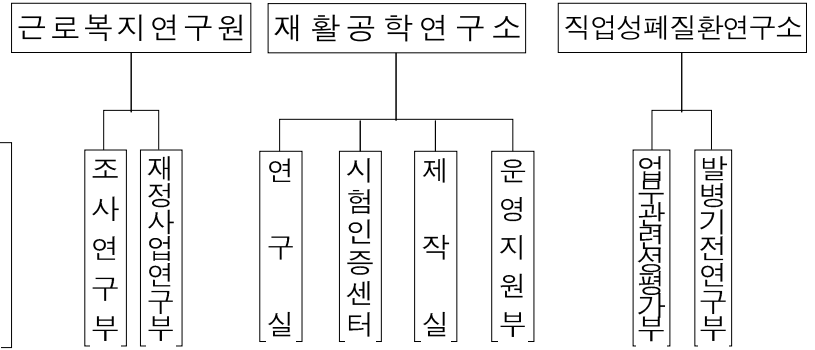
- 정선병원



- 경기요양병원



- 연구원 및 연구소



※ 케어센터는 경기요양병원 부설

□ 부서별 인원 현황 (증원 요구부서 음영표시)

상급 단위	단위 부서	현원('18.4월)			'18요구 (정규직)
		정규직	무기직	비정규직	
합 계(A+B+C-D)		6,971	823	876	+228
본부 소 계(A)		619	95	8	
임원		5	-	-	
비서실		3	-	-	
기획 조정 본부	소계	50	3	0	
	전략기획부	14	2	-	
	성과평가부	11	-	-	
	조직예산부	13	1	-	
	법무지원부	12	-	-	
정보화 본부	소계	141	3	0	
	정보기획부	13	-	-	
	정보인프라부	17	-	-	
	경영정보부	25	-	-	
	재정정보부	32	-	-	
	급여정보부	19	-	-	
	복지정보부	13	-	-	
	의료정보부	17	3	-	
경영 지원국	정보보안부	5	-	-	
	소계	73	2	0	
	운영지원부	27	2	-	
	인사부	17	-	-	
	노사협력부	14	-	-	
	시설안전부	13	-	-	
일자리안정 지원단	인적자원강화TF팀	2	-	-	
	소계	22	0	2	
	일자리안정계획부	9	-	1	
산재 보상국	일자리안정심사부	13	-	1	
	소계	39	3	0	
	보상계획부	15	2	-	
	업무상질병부	12	1	-	
구상금 협의조정위	보험급여관리부	12	-	-	
	소계	6	0	0	
재활국	구상관리부	6	-	-	
	소계	34	1	1	
	재활계획부	10	1	-	
	요양부	14	-	1	
보험 재정국	직업재활부	10	-	-	
	소계	30	4	0	
	적용계획부	9	2	-	
	보험가입부	11	2	-	
사회안전망 강화TF팀	보험재정부	10	-	-	
	소계	3	-	-	
자격 부과국	사회안전망강화TF팀	3	-	-	
	소계	22	2	0	
	근로자가입부	12	2	-	
의료사업 본부	부과운영부	10	-	-	
	소계	34	4	0	
	의료계획부	14	3	-	
	병원운영부	9	1	-	
	진료지원부	7	-	-	
	재활수가개발TF팀	4	-	-	

상급 단위	단위 부서	현원('18.4월)			'18요구 (정규직)
		정규직	무기직	비정규직	
복지 연금국	소계	55	67	4	
	복지계획부	14	2	-	
	퇴직연금부	15	36	-	
	일가정양립지원부	16	29	4	
	임금채권부	10	-	-	
산재심사 위원회	소계	12	1	0	
	심사지원부	12	1	-	
산재 심사실	소계	37	2	0	
	심사 1부	21	2	-	
	심사 2부	16	-	-	
고객홍보실	소계	22	2	1	
	윤리경영부	14	1	1	
	홍보부	8	1	-	
감사실	소계	31	1	0	
	감사부	18	1	-	
	청렴부	13	-	-	

상급 단위	단위 부서	현원('18.4월)			'18요구 (정규직)
		정규직	무기직	비정규직	
소속 기관 (B)	소계	6,555	728	868	
	지역 본부 (6) 및 지사 (50)	경영지원부	47	12	1
		경영복지부	466	47	598
		가입지원부	1,486	395	31
		확정정산부	26	-	-
		재활보상부	1,360	1	23
		부정수급예방부	66	-	-
		진료비심사부	62	-	-
		송무부	86	-	-
		복지사업부	113	-	107
	업무상질병판정위(6)		49	1	-
	인재개발원(1)		28	1	1
	콜센터(인천·울산·광주)		21	-	-
	근로복지연구원(1)		28	2	-
	재활공학연구소(1)		47	24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19	1	1
	10개 병원		2,651	244	106
	- 기타인원(노동조합,파견자)_C		112	-	-
	- 기타인원(육아휴직 대체자)_D		315		

참 고 2

연도별 정원 조정 내역

□ 보험사업(예산수반)

(단위 : 명)

연도	증감현황	증감사유
'18년	750	소 계
	590	▪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도입
	10	▪ 소액체당금제도
	150	▪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17년	301	소 계
	286	▪ 피보험자 자격관리 업무 이관
	6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9	▪ 소액체당금제도
'16년	29	소 계
	15	▪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확대
	8	▪ 직장보육 통합지원서비스 수행
	5	▪ 퇴직연금 정보화인력 충원
	1	▪ 조직운영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
'15년	64	소 계
	34	▪ 소액체당금 제도
	10	▪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3	▪ 내일찾기서비스 확대
	1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
	5	▪ 업무상 재해현장조사 확대
	3	▪ 보험조사기능 강화
	3	▪ 퇴직연금사업 인력 확충
	2	▪ 소송전문인력 확충
	3	▪ 고객지원센터(現 콜센터) 확대
'14년	74	소 계
	30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20	▪ 재활서비스 강화
	11	▪ 고용보험 적용확대
	6	▪ 폐질환 연구 및 산재보험 연구기능 강화
	2	▪ 유휴청사 관리
	5	▪ 퇴직연금 준법감시인 등(증 4명) 및 상용형시간제 지원(증 1명)
'13년	157	소 계
	77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53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20	▪ 고용정보관리인력 정규직 충원
	4	▪ 재활공학 및 폐질환 연구기능 강화
	3	▪ 산재보험연구기능 강화

□ 의료사업(예산비수반)

(단위 : 명)

연도	증감현황	증감사유
'18년	261	소 계
	241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10	▪ 통합의료 전문재활서비스 강화
	5	▪ 의공기사 운영
	5	▪ 산업보건 활성화
'17년	354	소 계
	214	▪ 간호사 법정인력 준수 및 간호서비스 품질개선
	30	▪ 전문재활치료 제공을 통한 조기 직업복귀 촉진
	4	▪ 대구병원 재활의학연구센터
	106	▪ 통합의료재활서비스 제공(수시증원)
'16년	46	소 계
	36	▪ 의료기능강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10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약무직 총원
'15년	-	-
'14년	-	-
'13년	-	-

참 고 3

근로시간 단축 관련 인건비 내역(해당없음)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증원 요구사업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1. 기존인력 절감 인건비

2. 증원인력 소요 인건비

IV

정현원차 분석

□ 정·현원차 추이

구 분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4월
정원(A)	5,507	5,582	6,237	7,248
현원(B)	5,365	5,452	6,048	6,971
차이(C=A-B)	142	130	189	277
비중(A/C)	2.6	2.3	3.0	3.8

□ 정·현원차 발생 원인

○ 연도별('15년~'17년)로 정·현원차는 평균 154명

- 정년퇴직, 중도퇴사 등 퇴직자 발생시점과 채용 시기 차이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단계별 인력 충원*에 따른 결원 발생

* 증원인력(1,011명) 중 잔여 246명(보험사업 150명, 의료사업 96명)

- 의료사업의 경우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자원 쏠림현상 등으로 인해 인력 유동성이 높은 간호직* 결원이 대부분

* 간호직 연도별 퇴직자 현황: '14년 102명, '15년 80명, '16년 75명, '17년 108명

□ 향후 계획

○ 신규 채용 진행 중으로 '18. 7~8월 임용 완료 예정이며, 채용 여력을 감안하여 정·현원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적극 관리

□ 검토 의견(기재부 작성)

II. 정원 조정 요구 및 검토 개요

1 전체 정원 조정 요구 내역

(단위 명, %)

구 분	전년도 조정 규모	'18년 정원 (A)	조정 요구 (B)	검토 (C)	조정 후 정원 (A+C)	증가율
정규직	1,117	7,248	228 ¹⁾			
무기직	-	1,388.125	-			
합계		8,636.125	228			

1) 예산수반 : 150명(13p참조), 예산비수반 : 78명(19p~27p참조)

2 사업별 정원 조정 요구 내역

(단위 명, %)

사업명		분야	구분	'18년 정원 (A)	조정 요구 (B)	검토 (C)	조정 후 정원 (A+C)	증가율
예산 수반	소규모사업 산재보험 적용확대(법령개정)	고용 복지	정규직	-	150			
			무기직	-	-			
예산 비수반	의사직 법정인력 준수 (환자생명·안전)	보건 의료	정규직	142	16			
			무기직	-	-			
	안전관리자 선임 (법정인력)	보건 의료	정규직	2	6			
			무기직	-	-			
	업무관련성 평가 전담 인력확보(기능강화)	보건 의료	정규직	-	56			
			무기직	-	-			
합계			정규직		228			
			무기직		-			

III. 사업별 정원 조정 요구 및 검토

<예 산 수 반>

1. 소규모사업 산재보험 적용확대(법령개정)

사업명	분야	유형	'18년		'18년 증원		기능조정 해당여부
			정원	현원	요구	담당검토	
소규모사업 산재보험 적용확대(법령개정)	고용 복지	정규직	-	-	150		

1] 증원 요구

가. 증원 필요성

○ (사회안전망 확충) 소규모사업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18.7.1. 시행) [【붙임 1-1】 참조](#)

- 산재보험 적용제외 기준에서 “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공사*” 및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 사업” 규정 삭제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이하 대수선 공사

○ (행정대상 증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등 공부상 자료를 근거로 추정, 산재보험 사업장 19만개소, 노동자 30만명, 재해자 3천명 증가

* 근로소득 미신고 등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행정대상은 미포함

<산재보험 행정대상 증가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 분	'15년~'17년 (3개년 평균 A)	'18년 (소규모 사업 포함 B)	증감 (C=B-A)	증감률 (C=C/A)
■ 사업장 수	1,998,860	2,193,640	194,780	9.7
■ 노동자 수	16,268,310	16,573,276	304,966	1.9
■ 재해자 수	90,185	93,188	3,003	3.3

○ (민원업무 증가) 산재보험 적용·자격관리, 재할·보상 등 351만 건의 민원서류 처리건수 증가

(단위: 개소, 명, %)

구 분	'15년 ~ 17년 (3개년 평균 A)	민원서류 (소규모 사업 포함 B)	증감 (C=B-A)	증감률 (C=C/A)
■ 적용·징수관리업무	35,850,613	39,522,689	3,507,846	9.74
■ 재·활·보·상 업무	4,017,981	4,106,846	88,865	2.2

나. 세부 산출 근거

○ 업무별 소요인력

계	①적용·자격부과	②재·활·보·상	③정보화
185명	150명 <증원요구 인력>	31명 <기존인력 활용>	4명 <기존인력 활용>

○ 산출근거 [【붙임 2】 참조](#)

① 적용·자격부과 분야 150명

▶ 150명 = 업무 증가량 3,507,846건 ÷ 직원 1인당 연간 평균 업무처리 건수 23,401건

② 재·활·보·상 분야 31명 [☞ 기존인력 활용](#)

▶ 31명 = (업무 증가량 88,865건 ÷ 직원 1인당 연간 평균 업무처리 건수 3,117건) + (재해조사 가중치 1.7명 + 부정수급조사 0.7)

③ 정보화 분야 4명 [☞ 기존인력 활용](#)

▶ 4명 = 노동보험·고객접점 관련 개발·운영(2.96명) + 종합분석 및 수시통계(1.1명) + 정보연계운영(0.18명) + IT인프라운영(0.27명) + 정보보안(0.37명)

2 기재부 검토의견 : 00명 증원 / 수용 곤란

○

-

□ 개정 배경

-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사업장 파악·관리 등 행정의 현실적 한계를 감안,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해 그 적용을 제외하는 사업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사업)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잦은 개·폐업 등으로 사업장 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산재보험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용제외사업 최소화 필요

□ 개정 내용

- 산재보험 적용제외 기준에서 “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공사” 및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 사업 규정 삭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적용제외사업)>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연금법 등 타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 삭제 나.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이하 대수선 공사 ➡ 삭제 3. 가구내 고용활동 4.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 ➡ 삭제 5.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및 수렵업 |
|---|

□ 시행일: 2018. 7. 1. 시행

□ 수행업무

- 소규모 사업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보험관계 적용·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업무
- 소규모 사업에서 발생한 산재노동자의 요양·보상·재활 업무

□ 행정대상

○ 연간 보험관리 대상 사업장(노동자): 194,780개소(304,966명)

- 소규모 건설공사(노동자): 142,780개소(121,063명)

- 상시1인 미만 사업장(노동자): 52,000개소(183,903명)

구 분	사업장수	산출근거
소규모 건설업	(100㎡이하 공사) 6만	59,704개소('17년 지차체 건축 착공신고 중 건축 100㎡·대수선 200㎡ 이하 건축공사 건수)
	(6대 면허 미보유 건설 사업장) 7만2천	71,987개소 = 417,480 ('16년 국세청 건설업 등록사업자 수) - 104,738 ('17년 6대 면허 건설업자수) - 240,755 ('16년 국세청 건설기계관리사업자 수)
	[가구주(家口主) 직영 건설공사] 1만1천	11,089개소 = 19,367,696(국내 전체 가구 수, 통계청 인구총조사) ÷ 5년(집수리 주기, 년) ÷ 9.32%(2만원 이상 기타공사 산재보험 적용 건 중 직영공사 비율) ÷ 3.07%('16년 5인 미만 건설업 재해율)
상시 1인 미만 사업장	5만2천	'16년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건 중 상시 1인미만 사업장 수

□ 건설업의 행정 영역

- 기존 산재보험 적용범위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대부분 국세청 등록 사업자 영역에 속하였으나,
- 소규모사업 적용확대 시 행정대상 파악이 불가능한 영역 존재
 - 특히 가구주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직접 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미가입재해 발생 불가피
 - ex) 가구주가 일용직을 고용하여 집 옥상에 화단을 만드는 경우
 - 건설현장의 경우 국세청 미등록 건설업자(오야지 등)가 존재하여 재해발생 이후 보험가입 사례 증가 우려

	직영공사		도급공사
	발주자 = 가구주(家口主)	발주자 = 사업자	
건축공사 (100㎡ 초과 등)	기존 산재보험 적용범위		
건축공사 외 공사 (2천만원 이상)			
건축공사 (100㎡ 이하 등)	행정대상 파악 가능		
건축공사 외 공사 (2천만원 미만)			
	행정대상 파악 곤란	국세청 미등록업자 파악불가	
			적용 확대 영역

□ 건설업 외 일반사업의 행정 영역

- 그간의 상시 1인 이상 일반사업의 경우 대체로 국세청 소득세 및 노동자 고용 자료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 신규 확대되는 상시 1인 미만의 사업의 경우, 국세청 미등록 사업자 및 노동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객관적 자료 부재로 행정대상 파악 한계
- ※ 건설업 및 부동산업 외 국세청 등록 사업자 수: 4,761,502개소

□ **적용부과·자격관리 업무: 150명**

= ① 업무 증가량 3,507,846건 ÷ ② 직원 1인당 연간 평균 업무처리 건수 23,401건

- ① 업무증가량 : 3,507,846건(연간)
- 민원서류의 3년 평균 처리건수에 적용확대에 따른 적용 사업장 증가분(9.74%)을 반영
 - 3,507,846건 = '15년~17년 연평균 민원처리 건수 36,014,843건 × (증가 사업장수 194,780개소 ÷ '15년~17년 연평균 성립사업장 수 1,998,860개소)
- ② 직원 1인당 연간 평균 업무처리 건수: 23,401건
- 23,401건 = 3년 연평균 민원처리건수 36,014,843건 ÷ 2017년 적용·자격부과 분야 정원 1,539명

□ **재활보상업무: 31명**

= (① 업무 증가량 88,865건 ÷ ② 직원 1인당 연간 평균 업무처리 건수 3,117건)
+ (③ 재해조사 가중치 1.7명 + ④ 부정수급조사 0.7명)

〈예 산 비 수 반〉

2. 의사직 법정인력 준수(병동당직의)

사업명	분야	유형	'18년		'18년 증원		기능조정 해당여부
			정원	현원	요구	담당검토	
의사직 법정인력 준수 [환자생명·안전]	보건 의료	정규	142	142	16		

① 증원 요구

가. 증원 필요성

- (법정인력) 의료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5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은 **응급상황에 신속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응급 당직의사 배치 필요**

* 입원환자 200까지는 1명,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 마다 1명 추가

※ 별첨: 당직의료인 제도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붙임 3 참조\]](#)

- (환자안전관리) 평일 야간 및 휴일 당직의사 부재시 의료사고 및 응급 상황 대처능력 미흡

※ (민원) 인천병원 연휴기간 산재환자 상병 악화에 따른 사망 관련 산재단체 민원 및 국정감사 서면질의('17년, 이용득 의원)

- (행정처분 대비) 보건소 점검 시 법정인력 부족 지적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추후 영업정지·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등 운영 차질 우려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밀양 세종병원 사고 등 의료·화재 사고로 인해 정부당국의 의료기관 인력기준 준수 등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

<소속병원 법정인력 부족사례[\[붙임 4 의사직 운영현황\]](#)>

- ❖(시정명령) 경기요양병원 화성시 보건소로부터 법정인력(의사 및 간호사) 부족으로 시정명령 조치 (불이행시 영업정지 15일, 300만원 미만 과태료)
- ❖(평가지적)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의료인력 운영 부적정(응급의사 병동환자 등 진료)'으로 2년 연속 미충족 평가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

- ❖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장비의 기준 및 규격, 의료인의 정원, 그 밖에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 법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15일**

나. 세부 산출 근거

○ 법정인력 준수 및 환자 안전관리: 의사직 16명

- (산출식) 요구인력 = 법정인력 - 사용중 당직의사 - 200명 인접 변동성 감안
(’17년 일평균 입원진료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태백	동해	정선	경기
입원환자	2,638	322	416	214	217	236	261	361	289	189	133
법정인력	19	2	3*	2	2	2	2	2	2	1	1
요구인력	16	2	2	1	1	2	2	2	2	1	1

* 안산병원 병동 당직의사 1명 사용

2 기재부 검토의견 : 00명 증원 / 수용 곤란

○

-

- (관련 규정) 의료법 제4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5는 의사와 간호사를 동시 배치하도록 명시

<의료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5>

- ❖ (법 제41조)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 ❖ (시행규칙 제39조의5)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수로 한다.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유권해석(' 18.2)

- ❖ (답변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김준혁 주무관
- ❖ (답변요지) 의사 및 간호사 동시 배치

* 관련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집 발췌

<400병상의 병원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은?>



• 의료제도과 •

의료법 제41조에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0병상의 의료기관에는 의사2인, 간호사4인이, 30병상의 한방병원에는 1인의 한의사와 2인의 간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타 공공기관 당직의사 운영 현황

- 서울의료원 등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전공의 당직근무
 - 공단 소속병원 중 태백병원만 수련병원으로 전공의 응급실 근무

구분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인천의료원	중앙보훈병원
당직근무인원	5명	4명	2명	8명
병상수	623	690	304	952

2 기존인력(일반의료진) 활용 여부

- 의사수가 적고[표1, 2참조], 단수진료과가[표3 참조] 많아 진료과장 당직 운영시 업무부담 가중에 따른 진료피로도 증가 및 진료 차질* 발생 우려
 - 비정규직 운영시 업무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의료 사고 발생 및 잦은 인력 교체**로 인해 진료 연속성 저해 우려

* 당직 근무 후 휴진 시 진료공백 발생

** '17년말 기준 공단병원 정규직 의사 재직기간은 5.9년인 반면,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 연수는 2.2년에 불과

< [표1] 법정인력 현황('17년 기준)>

구분	일평균 진료실적			의료법상 정원 (D=C/20)	공단병원 정원(E) (기간제포함)	과부족 (E-D)
	입원(A)	외래(B)	조정 환자 (C=A+B/3)			
'17년	2,638명	4,240명	4,051명	203명	189명	△14명

* 법정인력 산정기준: 연평균 1일 입원 환자를 20명(요양병원 40명)으로 나눈 수,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 [표2]전국병원평균 대비 의사직 현황>

100병상 전문의 기준				공단병원			
평균			공단 병원	정원	환산소요인원(2,865병상기준)		
전체	민간	공공			전체 평균	민간병원	공공병원
13.7명	14.0명	12.3명	6.6명	189명	393명	401명	352명

* 통계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원경영분석(2015년)

[표 3] 병원별 단수진료과 현황('18.4월)

- ①(인천) 비뇨기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②(안산) 비뇨기과, 산부인과, 신경과, 일반외과, 정신건강의학과 ③(창원) 비뇨기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정신건강의학과 ④(대구) 내과, 정형외과 ⑤(순천) 신경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⑥(대전) 산부인과, 신경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정신건강의학과 ⑦(태백)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⑧(동해) 신경외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마취과 등 진료지원과는 제외

3. 안전관리자 선임(법정인력)

사업명	분야	유형	'18년		'18년 증원		기능조정 해당여부
			정원	현원	요구	담당검토	
안전관리자 선임 [환자생명·안전]	보건 의료	정규	2	2	6		

1 증원 요구

가. 증원 필요성

- (법정인력)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선임 필요

※ 공공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활동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기업활동규제 완화와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기특법”) 미적용 → 위탁금지, 전담 인력 배치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 ▶(시행령 제12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법 제15조 제1항 등 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안전강화) 체계적인 안전교육 및 위험성 평가 등 안전관리업무 [표1 참조] 전담자 배치로 병원 내 각종 사고 및 산재예방에 기여

※ (법령개정) 산업재해 사망사고시 안전·보건 책임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8.2.9~3.21.)

나. 세부 산출 근거

법정인력 준수 및 환자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6명(기술직)

- (산출식) 요구인력 = 법정인력 - 사용중 인력 + 증원소요(간접고용→ 직고용전환 484명 등)

(’18.3.31. 현원 기준, 단위: 명)

구 분	계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태백	동해	정선	경기
근로자수	2,782	423	441	361	266	271	362	243	262	93	60
법정인력	4	1	1	1	-	-	1	-	-	-	-
사용중인력	2	1	-	1	-	-	-	-	-	-	-
요구	6	-	1	-	1	1	1	1	1	-	-

※ 인천 및 창원병원의 안전관리자 운영중

※ 대구, 순천, 태백, 동해: 증원소요 반영시 300명 초과 예상되어 요구

※ 증원소요(표 2, 3 참조) : ’18년 484명(기관당 평균 48명)

★ [표 1] 안전관리자의 업무

< 안전관리자의 업무(시행령 제13조) >	
❖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산업안전 발생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등

★ [표 2] 간접고용 노동자 → 직접고용 전환직종 및 인력 현황

(단위: 명)

계	청소	경비	시설	조경	운전	세탁	요양 보호사	간병	급식
484	115	24	53	7	4	10	36	70	165

※ '18.4월말 현재 간접고용노동자 직고용 전환을 위해 정원 266명 반영

★ [표 3]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완료시('18년) 병원별 상시 근로자수

(단위: 명)

계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태백	동해	정선	경기
계(A+B)	480	492	422	321	304	397	308	302	118	122
'18.3월 현재(A)	423	441	361	266	271	362	243	262	93	60
간접고용 직고용전환 (B)	57	51	61	55	33	35	65	40	25	62

② 기재부 검토의견 : 00명 증원 / 수용 곤란

○

-

4. 업무관련성 평가 전담인력 확보(기능강화)

사업명	분야	유형	'18년		'18년 증원		기능조정 해당여부
			정원	현원	요구	담당검토	
업무관련성 평가	보건 의료	정규	-	-	56		

1 증원 요구

가. 증원 필요성 【☞ 주요 사업내용 붙임 5 참조】

○ (재해조사 신뢰성 강화) 업무상 질병 판정시 전문가의 의학적 평가 병행으로 재해조사의 전문성·신속성 제고

-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직업적인 원인 외 개인요인 등 비직업적인 원인 (연령증가, 일상생활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어 의학적 평가* 병행 필요

* 과거 병력, 개인적 위험요인, 직업적 노출력 등 직업력조사 및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 작성

○ (치료의 골든타임 확보) 재해조사 초기 단계부터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의 적극적 조기 개입을 통해 업무상 질병 판정 기간* 단축

* 근골격계 질병 산재승인 처리기간: '16년 57.3일 → '17년 17일, 40.3일 ↓

○ (외부 지적 개선) 업무상 질병에 대한 낮은 현장조사율('17년, 50.4%) 및 재해조사의 전문성 부족에 대해 국회 등 외부 지적이 지속

※ 현장조사율 : '13년 60.0% → '14년 65.2% → '15년 66.7% → '17년 50.4%

○ (적용확대) ' 18.2월 이후 적용상병(근골격계→ 뇌심혈관계, 소음성 난청, 정신질환) 및 특진 의료기관 추가 확대(대구·태백병원, 6개소→8개소)

※ 적용건수: ('17.10월~) 1,131건 → ('18년~) 3,000건(1,869건 ↑)

나. 세부 산출 근거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특진 대상자 진찰 및 진료,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 작성 등 증 16명(기관당 2명 × 8개소)

○ (산업위생관리기사)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상담 등

- 소요(40명) = 「3,000건(A) × 960분(B) × 2인/1조」 ÷ 120,000분(C) ※ 8명 효율화

구 분	계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태백	동해
합 계	56	7	7	7	7	7	7	7	7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6	2	2	2	2	2	2	2	2
산업위생관리기사	40	5	5	5	5	5	5	5	5

2 기재부 검토의견 : 00명 증원 / 수용 곤란

○

-

□ 추진목적

- 요양급여 신청서 접수 시 재해조사 초기단계부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전문성 및 신속성 제고

(AS-IS)	(TO-BE)
• 공단 일반직 신체부담 업무 현장조사 • 재해조사 담당직원의 잦은 교체로 전문성 부족 및 자문의사 부족으로 처리 지연 • 조사 후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별도의 의학자문 실시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의학전문가가 직접 현장조사 및 업무관련성 평가 • 조사 후 별도의 자문절차 생략 • 직업력, 신체부담 요인조사 동시 실시 후 치료에 활용

□ 주요현황

- (적용 대상) ① ('17.10월~) 건설업 일용직 등 6개 직종 및 폐업사업장 우선 적용 → ② ('18.2월~) 건설업 등 5개 업종, 용접공 등 3개 직종 및 폐업사업장 등으로 확대
- (적용 상병) ① ('17.10월~) 근골격계 질환, ② ('18.3월~) 뇌심혈관질환 및 소음성 난청, ③ ('18.7월~) 정신질환
- (특진 의료기관) 인천·안산·창원·순천·대전·동해 등 6개소, 대구·태백(확대)
- (업무프로세스) 특진 의료기관 역할은 직업력조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 발급 등 역할 수행
- (예상건수) '18. 2월부터 업무관련성 평가대상 업종 및 상병 확대로 현행 대비 1,869건 증가한 약 3,000건 예상*

* 뇌심혈관계질환인정기준고시('18.1.) 관련 기준 확대(완화)로 동 질병 재신청 건수 증가 예상(약300건, 불승인건의 25%)

<업무관련성 평가 '17년 실적 및 '18년 예상건 수>

구 분	현행('17.11~12.)	확 대('18년)	증가
적용대상	1,131건	3,000건(재신청 포함)	1,869건 ↑
적용업종	6개 직종 및 폐업사업장	5개 업종 및 3개 직종, 폐업사업장	
적용상병	근골격계(1,131)	근골격계(1,700)	569건 ↑
	-	뇌심혈관(300)	300건 ↑
	-	소음성 난청(500)	500건 ↑
	-	정신질환(200)	200건 ↑

참고 3

사업 관련 법령 등 기타 참고자료

분 야	주 요 사 업	관 련 법 령
산재 · 고용 보험	▪ 산재보험급여 지급 ▪ 산재근로자 재활 및 사회·직업복귀 지원 ▪ 산재보험시설(병원, 케어센터 등) 설치·운영 ▪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보험 적용·징수 ▪ 고용보험 적용·징수 ▪ 산재보험 고용정보관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 고용보험료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진폐위로금 지급 ▪ 진폐근로자 건강진단 및 장학사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 복지	▪ 근로자복지지원 ▪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신용보증지원사업 ▪ 퇴직연금사업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체당금 지급 ▪ 임금채권 변제금 회수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지원	임금채권보장법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지원사업 ▪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 ▪ 고용창출지원융자사업	고용보험법

Ⅳ. 직급별 정원조정 요구 및 검토

(단위: 명, %)

구분	합계	임원	본부장	병원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의사	변호사	연구원
현 정원(명)	7,248	6	12	10	65	273	745	2,428	2,456	945	101	142	10	55
비중(%)	100	0.1	0.2	0.1	0.9	3.8	10.3	33.5	33.9	13.0	1.4	2.0	0.1	0.7

요구 (명)	소계	228	-	-	-	-	7	26	74	42	47	-	32	-	-
	소규모사업 산재 보험 적용확대	150	-	-	-	-	7	24	69	32	18	-	-	-	-
		100					4.7	16.0	46.0	21.3	12.0				
	의사직 법정인력 준수(병동당직의)	16	-	-	-	-	-	-	-	-	-	-	16	-	-
		100											100		
검토 (명)	안전관리자 선임	6	-	-	-	-	-	-	-	-	6	-	-	-	-
		100									100				
	업무관련성 평가	56	-	-	-	-	-	2	5	10	23	-	16	-	-
		100						3.6	8.9	17.7	41.1		28.6		
	반영 후 정원														
검토 (명)	소계														
	소규모사업 산재 보험 적용확대														
	의사직 법정인력 준수(병동당직의)														
	안전관리자 선임														
	업무관련성 평가														
반영 후 정원															
비중(%)															

□ 사업별 직급별 정원 비율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	임원	본부장	병원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의사	변호사	연구원
현정원(명) (A+B)	7,248	6	12	10	65	273	745	2,428	2,456	945	101	142	10	55
비중(%)	100	0.1	0.2	0.1	0.9	3.8	10.3	33.5	33.9	13.0	1.4	2.0	0.1	0.7
보험 사업(A)	4,569	5	12	0	57	226	603	1,970	1,044	621	6	0	10	15
비중(%)	100	0.1	0.3	0.0	1.2	4.9	13.2	43.1	22.8	13.6	0.1	0.0	0.2	0.5
의료 사업(B)	2,679	1	0	10	8	47	142	458	1,412	324	95	142	0	40
비중(%)	100	0.0	0.0	0.4	0.3	1.8	5.3	17.1	52.7	12.1	3.5	5.3	0.0	1.5

※ 연구원(55) : 수석위원(1), 연구위원(15), 책임연구원(28), 전임연구원(11)

V. 정원 조정에 따른 채용 계획 수정

□ (당초 채용 계획) 18년 2/4분기까지 1,011명을 채용완료 예정

□ (정원조정을 반영한 채용 계획) 228명이 증원되면 474명을 3분기내로 채용 완료할 계획임

※ 474명: '18년 정기 증원 잔여인력(246명)+ '18년 수시증원(228명)

< 분기별 채용계획 및 수정 >

	계	18.1분기	18.2분기	18.3분기	18.4분기
당초	1,011	765	96	150	-
증원 후	1,239	765	96	378	-

* 의사직의 경우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자원 쏠림현상 등을 감안하여 일부 채용시기 지연될 수 있음

붙임 1

사업별 인력/예산 현황

(‘18. 4월말 기준, 단위: 억 원, 명)

사 업 명	‘15예산 ‘15정원	‘16예산 ‘16정원	‘17예산 ‘17정원	‘18예산 ‘18정원
계(예산)	5,623,915	5,999,246	6,283,578	9,996,712
계(정원)	5,473	5,582	6,131	7,248
예산/정원 비율	1,028	1,075	1,025	1,379
인건비	312,476	332,638	384,062	435,107
경상운영비	97,159	93,918	87,911	131,398
차기이월	163,535	203,065	196,972	184,349
차입상환금	75	79	83	86
기타	6,507	7,986	5,821	220,355
※지원조직 등(인력)	529	530	511	536
사업비	5,044,163	5,361,560	5,608,729	9,209,766
1. 산재보험회계	4,234,334	4,439,229	4,585,398	5,184,850
(예산/정원 비율)	2,123	2,138	2,133	2,705
	1,993	2,076	2,150	1,917
가. 산재재활사업	63,450	65,929	69,427	72,930
	234	234	234	302
1)산재근로자 합병증등 예방관리	44,120	45,367	49,355	52,405
2)산재근로자직업훈련	1,257	1,194	1,156	1,156
3)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2,653	2,598	2,598	2,688
4)사회심리재활지원	2,694	2,634	2,472	2,472
5)산재근로자 복지사업지원	5,594	4,604	4,282	4,282
6)맞춤서비스지원	7,132	7,132	7,164	7,227
7)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	2,400	2,400	2,700
나. 산재보험요양관리	2,287	2,287	2,718	14,717
	403	403	403	520
1)산재부정수급관리	987	987	1,283	1,283
2)산재의료기관평가	387	387	368	368
3)업무상재해조사판정	913	913	1,067	1,067
4)출퇴근재해보호				14,717
다. 연구기관지원 및 케어센터지원	19,576	20,417	20,146	17,081
	69	69	69	69
1)연구기관	15,468	16,012	15,842	12,808
2)케어센터	4,108	4,405	4,304	4,273
라. 산재보험시설건립	14,438	8,974	6,636	757
	7	7	7	7
마.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	15,093	14,006	13,857	14,266
	3	3	3	7
바.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	6,353	8,993	7,715	8,490
	72	72	72	90
1) 산재근로자 가입정보관리	2,154	2,276	2,318	3,005

사 업 명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15정원	'16정원	'17정원	'18정원
2)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운영	4,199	6,717	5,397	5,485
사. 창업점포지원	2,400	2,140	2,040	1,540
	26	26	26	26
아. 산재보험급여	4,084,450	4,292,324	4,439,100	5,034,678
	592	592	593	765
자. 산재생활안정자금융자	19,153	16,901	16,501	13,293
	26	26	26	26
차. 산재사무대행기관지원	7,134	7,258	7,258	7,098
	33	33	33	33
※ 가입부과업무	658	673	667	860
2. 의료사업회계	103,492	106,705	116,280	119,688
	1,835	1,881	2,192	2,559
(예산/정원 비율)	56	57	53	47
가. 산재병원 운영	103,492	106,705	116,280	119,688
	-	-	-	-
3. 고용보험회계	234,790	277,720	296,106	355,690
	683	691	955	955
(예산/정원 비율)	344	402	310	372
가. 직장보육시설운영	30,247	30,351	30,351	30,727
	2	10	10	10
1)보육시설운영	28,462	28,462	28,462	28,462
2)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운영	1,785	1,889	1,889	2,265
나. 장기실업자 등 창업점포지원	270	-	-	-
	2	2	2	2
다. 고용보험적용부과지원	4,866	7,505	12,574	12,507
	62	62	337	337
1) 고용보험료부과지원	2,057	3,091	2,319	2,690
2)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운영	2,809	4,414	3,504	3,566
3)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	-	6,751	6,251
라. 근로자학자금대부	-	-	-	-
	-	-	-	-
마.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30,000	28,500	25,700	24,145
	3	3	3	3
바.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113	217	3,500	2,208
	3	3	3	3
사. 고용환경개선융자	2,400	300	308	245
	-	-	-	-
아. 고용사무대행지원	6,487	6,637	6,637	6,305
	22	22	22	22
자.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28,709	44,858	49,265	49,829
	1	1	1	1
차. 직장보육시설인건비 등 지원	-	51,945	63,422	66,355
	-	-	-	-
카.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융자	40,000	35,000	29,500	15,873
	-	-	-	-
타. 사회보험료지원금	91,698	72,407	72,049	142,321
	-	-	-	-
파. 재택원격근무인프라구축지원	-	-	2800	1,960

사 업 명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15정원	'16정원	'17정원	'18정원
※ 가입부과업무	495	495	577	577
4. 근로복지진흥기금회계	133,795	135,796	128,540	122,238
	177	182	174	174
(예산/정원 비율)	756	746	739	703
가. 중소복지계정사업	120,288	119,918	114,969	108,667
	125	130	122	122
1)근로자복지지원	4,234	4,391	3,772	4,493
가)문화예술제	595	505	504	504
나)직장여성임대아파트 운영	2,522	2,528	1,910	2,732
다)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1,117	1,358	1,358	1,257
2)퇴직연금사업운영	3,275	4,577	2404	3,490
3)근로복지정보시스템	4,411	4,403	3,746	5,992
가)퇴직연금정보시스템구축	4,011	4,003	3,346	-
나)근로복지정보시스템 운영	400	400	400	-
4)자산운용전산시스템 운영	-	-	-	-
5)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8,000	6,547	5,047	4,692
6)근로자생활안정대부	100,368	100,000	100,000	90,000
나. 신용보증사업계정	13,507	15,878	13,571	13,571
	52	52	52	52
1)신용보증대위변제	13,507	15,878	13,571	13,571
5. 임금채권보장회계	276,293	331,004	411,718	417,419
	111	145	151	161
(예산/정원 비율)	2,489	2,283	2,727	2,593
가. 채당금	274,253	326,004	404,424	409,956
	110	144	150	160
나.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용자	2,040	5,000	7,294	7,463
	1	1	1	1
6. 에너지특별회계	61,209	70,856	70,437	80,259
	15	15	15	15
(예산/정원 비율)	4,081	4,724	4,696	5,351
가. 진폐위로금	61,209	70,856	70,437	80,259
	15	15	15	15
7. 일자리안정자금지원회계	-	-	-	2,929,372
	-	-	-	143
(예산/정원 비율)	-	-	-	20,485
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	-	-	2,929,372
	-	-	-	143
8. 기타회계	250	250	250	250
	-	-	-	-
(예산/정원 비율)	-	-	-	-
가. 퇴직연금연구사업위탁운영	250	250	250	250